

신구조문 대비표 –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

거래문서명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	<p>제 23 조 (통지방법 및 효력)</p> <p>① 은행은 제 17 조 제 2 항,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,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.</p> <p>③ 이용자가 제 2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 2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23조 (통지방법 및 효력)</p> <p>① 은행은 제18조 제2항,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,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p> <p>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거래의 처리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며,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.</p>	< 변경 >